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1662호
- 발 의 자 : 서윤기 의원 외 43명
- 발의일자 : 2020년 7월 13일
-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## 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관람의 금지사항을 변경함(안 제6조제2호).
- 나.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 시 관람료를 반환하도록 함(제8조제6항 신설).
- 다. 무료관람의 대상을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확대함(안 제9조제1항제3호).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가. 개정안의 취지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 하는 것으로 침해 여부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별적 용어사용,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인권침해적 요소</li> <li>○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(벌칙)부과 여부, 이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받을 수단의 보장 여부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시민의 알권리, 참여권, 평등권 등과 관련된 기본권 보장 여부</li> </ul>
--

##### 나. 개정안의 내용

- 현행 조례 제6조는 시설의 입장·이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으로서 관람 금지의 범위가 타 조례와 불일치하여 시민의 문화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 받았음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는 관람을 금지한다. 1. 삭제 2. 술에 취한자 3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.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제6조(관람의 금지) ----- <u>사람은</u> -----. 1. 삭제 (현행과 같음) 2.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. <삭 제> 4. ----- ----- 사람

위 개정안과 같이 "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"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관람객에 대한 관람 금지라는 관람객에 불이익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

금지 행위를 일일이 조례에 나열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므로 시설 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동 개정조례안 제8조제6항은 관람 취소자에 대한 관람료 환불 규정을 명시하여 반환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.

개 정 안(신설)
제8조(관람료) ⑥ <u>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</u>

- 동 개정조례안 제9조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조항 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무료관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무료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3. 「 <u>장애인복지법</u> 」에 따른 장애인	제9조(무료관람) ①----- <u>사람</u> 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 <u>장애인복지법</u> 」에 따른 장애인 및 <u>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</u>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가 넓고, 모든 장애인이 보호자의 동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 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공공시설 이용·사용 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에 대하여 관람(이용)료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**〈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〉**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는 관람을 금지한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<u>술에 취한자</u></p> <p>3. <u>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</u></p> <p>4.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자</u></p>	<p>제6조(관람의 금지)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
<p>제8조(관람료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<u>자</u>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삭제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(관람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</u></p>

제9조(무료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
5. · 6. (생략)
7.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
8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9.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
10.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② (생략)

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.

제9조(무료관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사람 -----  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4. -----  
-----  
----- 사람
5. · 6. (현행과 같음)
7. ----- 사람
8. ----- 사람
9. -----  
----- 사람
10. -----  
-----  
사람

② (현행과 같음)